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의 각급선거관리위원장 호선 금지〉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확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관인 위원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5條(委員長) ① (생략) 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委員長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단서 신설>	第5條(委員長)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법관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u>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선임 방식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제1항~제3항).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대개 지방법원장)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법관인 위원이 맡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¹⁾

1)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10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중앙 및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황 》

연번	구분	위원장	주요 경력
1	중앙	노태악	(현) 대법원 대법관
2	서울	오민석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3	부산	김문관	(현) 부산지방법원장
4	대구	강동명	(현) 대구지방법원장
5	인천	김귀옥	(현) 인천지방법원장
6	광주	장용기	(현) 광주지방법원장
7	대전	김용덕	(현) 대전지방법원장
8	울산	유진현	(현) 울산지방법원장
9	세종	김용찬	(현)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0	경기	김세윤	(현) 수원지방법원장
11	강원	김재호	(현) 춘천지방법원장
12	충북	조미연	(현) 청주지방법원장
13	충남	문봉길	(현)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14	전북	정재규	(현) 전주지방법원장
15	전남	양영희	(현)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16	경북	곽병수	(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17	경남	이영훈	(현) 창원지방법원장
18	제주	이흥권	(현) 제주지방법원장

* 각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2025. 4. 21. 확인)

대법관인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간의 관례는 1960년 6월 15일 시행된 헌법 제75조의2²⁾가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

2) 대한민국헌법(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하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법관인 위원을 관례적으로 호선해 온 것으로 보임.³⁾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특성상, 신분 및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온 관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⁴⁾ 선거관리의 막중한 책무를 법관 업무와 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법관인 위원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관 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위원장의 직무전념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차질 없는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502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4) 특히 선거관련소송의 관할권은 대법원에 있는데,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소송·당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기관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 김태홍,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2. p.81.

5) 동아일보, “[광화문에서/한상준]“매일매일이 무두절”... 선관위원장 상근으로 바뀌야“ 2023.6.21.

다만, 법관 외의 정당 출신이나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인물⁶⁾들이 위원장으로 호선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유일한 상근직인 상임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온바, 위원장 직위의 상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

위원장 직위의 상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법관 겸직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유로 중앙 및

- 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국회 선출 위원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 포함됨.

구분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 7) 이충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방안”, 법학연구 통권 111호, 2022, pp.46~51., 김태홍, 앞의 논문, pp.81~83. 등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⁸⁾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관인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기여한 정도, 타 지역 출신의 위원장 선임시 예상되는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 대안의 가능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2호, 김민전의원 대표발의)